

제4장

해외 기업생멸통계의 작성방법론

손 상 익

제1절 서론

기업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을 하는 주체이다. 생산을 위하여 기업은 기계·설비·공장을 짓고 그곳에서 일할 노동력을 구입하여 필요한 자재를 구입·조합하여 상품을 생산한다. 즉 기업은 자본 및 노동력을 필요한 만큼 시장에서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시장에 내다파는 활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이러한 생산요소를 아무렇게나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능한 한 최소로 낮추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최적생산량을 결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조직인 기업의 활동은 자본주의사회의 시장경제에서 가능한 것이며, 자유로운 이윤추구활동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 계속 생산을 늘려 가는 것이 그 특징이다.

기업의 목표는 가치창출에 있다. 기업은 그 생명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치창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가치창출에 있어서 투입보다는 산출이 커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백 가지의 지식보다 하나의 성과를 존중하는 성과우선 조직이다. 이윤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없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이라고 하는 사료를 먹고 자라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나 살고 죽듯이, 기업도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시장경제에서는 새로운 사업체가 등장하고 기존 사업체가 폐쇄되는 일이 동일 시점에 공존하며, 끊임없이 사업체는 생성, 확장, 축소,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이어간다. 이러한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이다.

기업은 생존가치인 이윤을 얻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는 특수조직이다. 모든 조직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만큼 환경에 민감한 조직은 없다. 기업은 작은 환경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존재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왔고, 우리 사회의 고용창출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1981년에 약 126만 개에 불과하였으나, 24년이 지난 2005년 현재 320만 개를 넘어 2.5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전체 사업체의 총 종사자수도 1981년 660만 명에서 1,515만 명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경제전쟁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고, 기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생로병사의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방식의 유연화, 제품의 다양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의 속도가 사회전반에 몰아치고 있다. 창조적 파괴와 자원의 재분배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이는 곧 새로운 사업의 출현과 소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구조조정 과정을 동반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동과 기업 생성·소멸의 원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멸통계가 기초통계로서 필수적이다.

기업의 생성·소멸은 일자리 창출·소멸과 맥락을 같이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속적인 실업이 적당한 일자리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다면 어떠한 기업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인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중점대상이 기존 기업의 확장인가 혹은 새로운 창업기업인가, 새

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규명하는 것은 노동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최근 사업체통계작성을 주요 이슈화하여 기업생멸 통계작성의 일관성, 연속성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통계작성의 흐름과 통계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생멸통계 작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생멸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기업생멸통계의 현황과 사업체 등록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생멸통계 작성에 대한 벤치마킹을 함과 아울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나라의 사업체 고유번호 관리, 자료등록과 DB구축방법, 기업생성·소멸의 개념과 자료의 조정방법, 자료의 한계점과 자료의 활용 및 분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국 통계작성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문하고 답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세계 각국의 기업생멸통계의 작성 현황과 영국, Eurostat, 미국 등의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생멸통계의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기업 생성·소멸 통계 작성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과 작성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2절 해외 기업생멸통계의 작성 현황

1. 세계의 기업생멸통계 작성현황

세계 각국의 기업생멸통계 작성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표 4-1>을 통해 세계의 기업생멸통계 작성현황을 살펴보면,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4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기업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통계를 작성·제공하고 있다.

<표 4-1> OECD회원국의 기업생멸통계자료

OECD국가명	통계자료명	웹사이트 주소
오스트레일리아	Experimetal Estimates, Entries and Exits of Business Entities	http://www.austats.abs.gov.au
오스트리아	Unternehmensneugründungen in Osterrech	http://portal.wko.at
벨기에	Demographie des entreprises	http://statbel.fgov.be
캐나다	Business Dynamics in Canada	http://www.statcan.ca
체코	Demograph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OSME) study	http://forum.europa.eu.int
덴마크	Statistical Yearbook	http://www.dst.dk
핀란드	Enterprise openings and closures	http://www.stat.fi
프랑스	Creations d'entreprises	http://www.indices.insee.fr
독일	Businesses, Business notifications	http://www.destatis.de
그리스	<No data sources found>	
헝가리	Enterpris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http://portal.ksh.hu
아이슬란드	Registered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http://www.statice.is
아일랜드	<No data sources found>	
이탈리아	Movimprese, InfoCamere	http://www.infocamere.it
일본	Establishment and Enterprise Census	http://forum.europa.eu.int
한국	<No data sources found>	
룩셈부르크	Demographie des Enterprises	http://www.statisques.public.lu
멕시코	<No data sources found>	
네덜란드	Establishment and Closure of Businesses	http://statline.cbs.nl
뉴질랜드	SMEs in New Zealand: Structure and Dynamics	http://www.med.govt.nz
노르웨이	Statbank Norway/Enterprises	http://statbank.ssb.no
폴란드	Demograph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OSME) Study	http://forum.europa.eu.int
포르투갈	Business demography indicators	http://epp.eurostat.ces.eu.int
슬로바키아	Demograph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OSME) Study	http://forum.europa.eu.int
스페인	Demografia de las Empresas	http://www.ine.es
스웨덴	Nystartade foretag	http://www.scb.se
스위스	Demographie des entreprises	http://www.bfs.admin.ch
터키	Newly Established and Liquidated Companies and Firms	http://www.die.gov.tr
영국	Value-Added Tax Registrations and De-registrations	http://www.sbs.gov.uk
미국	Statistics of US Businesses/Dynamic Data	http://www.census.gov

자료: N.Ahmad and S.Vale(2005), pp.14~17.

2. 통계작성 방법의 다양성¹⁾

통계작성 방법과 비교성 측면에서 보면,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기업통계 작성방법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통계의 단위, 개념, 작성범위가 매우 다르고, 이에 따라 상호 비교는 불가능한 것으로 OECD자료는²⁾ 분석하고 있다.

우선 통계단위를 보면, 대부분 국가의 경우 통계의 원자료를 행정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단위는 조세 또는 법적 의무를 갖는 형태의 단위와 사업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장소의 단위로 되어 있다.

EU회원국의 경우 EU규정에 따라 통계단위는 기업체(Enterprise)로 되어 있지만, 아직 회원국들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U이사회규정((EEC), No.696/93 of 15 March 1993)에서 보면 EU회원국들이 사용하는 기업통계단위는 다음의 8가지이다.

- the Enterprise
- the Institutional Unit³⁾
- the Enterprise Group
- the Kind-of-Activity Unit (KAU)
- the Unit of Homogeneous Production (UHP)
- the Local Unit
- the Local Kind-of-Activity Unit (local KAU)
- the Local Unit of Homogeneous Production (local UHP)

오스트리아에서는 enterprise, kind of activity unit, local unit를 사용하고 있고, 독일과 스위스는 EU규정에 따른 enterprise, local unit을 사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enterprise와 enterprise group을 사용하고 있고, 스페

1) 2003년 파리에서 개최된 OECD의 "Workshop on Improving Statistics on SMEs and Entrepreneurship"자료 참고 바람.

2) OECD Statistics Directorate(2005).

3) The institutional unit is an elementary economic decision-making centre characterised by uniformity of behaviour and decision-making autonomy in the exercise of its principal function. A unit is regarded as constituting an institutional unit if it has decision-making autonomy in respect of its principal function and keeps a complete set of accounts (Eurostat, 2003).

인은 enterprise를 사용하는 등 기존 EU회원국은 대체로 1993년의 EU규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4년에 가입한 헝가리는 companies, partnerships, sole proprietors를 사용하며, 슬로바키아는 legal units, enterprises, local units를 사용하고 있어 EU규정에서 벗어난 다양한 기업통계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통계의 주단위로 사업체(Establishment)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업통제 하의 사업체 집단인 상사(Firm)란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Firm 대신 Business란 용어를 사용한다.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3)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단위는

- the enterprise
- enterprise group
- the kind-of-activity unit (KAU)
- local unit
- establishment
- homogeneous unit of production 등이다.

기업규모의 적용도 국가별로 달리하고 있는데, 예컨대 한 EU회원국에 본부가 소재한 어떤 기업체(Enterprise)가 다른 회원국에 생산시설을 신설했을 때, EU는 새로운 기업체(Enterprise)가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미국의 한 주(State)에 본부를 둔 기업체가 다른 주에 생산시설을 신설했을 때, 미국에서는 새로운 사업체(Establishment)가 생긴 것으로 간주된다.⁴⁾

기업 생성·소멸의 개념에 있어서도 각국의 조세와 보조금 제도를 고려하여 기업 활동의 개시 또는 종료를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시점과 단계가 국가별로 다르며, 특히 기업합병, 인수, 기업분할, 기업분리, 구조조정, 아웃소싱, 기업명의 변경, 기업 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각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OECD Statistics Directorate(2005), p.9.

EU는 2년 동안 사업 활동이 없을 경우 기업 소멸로 보지만, 캐나다의 경우 1년 동안 활동이 없으면 기업 소멸로 본다. 뉴질랜드는 납세기록의 기업리스트에서 등록 또는 삭제가 될 경우를 기업 생성과 소멸의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헝가리는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동일한 기업 ID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생멸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는 2년 동안 행정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으면 기업 소멸로 본다.

OECD자료⁵⁾에 따르면 기업의 생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행정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성보다는 소멸을 파악하는 데 많은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등은 기업의 생성과 소멸을 확실히 파악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의 경우 기업 소멸은 부분적으로만 파악해내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기업의 납세번호로 생멸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성은 쉽게 파악되지만, 소멸의 경우 실질적 발생 이후에도 납세번호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OECD자료는, 오스트리아는 행정자료가 불충분하며, 핀란드는 아주 작은 영세기업의 자료가 개선되어야 하고, 독일의 경우 실질적 발생 이후 행정자료상에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슬로바키아와 몰도바는 생멸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병, 인수, 기업분리·분할, 법적구조 변화 등이 실질적인 생성 및 소멸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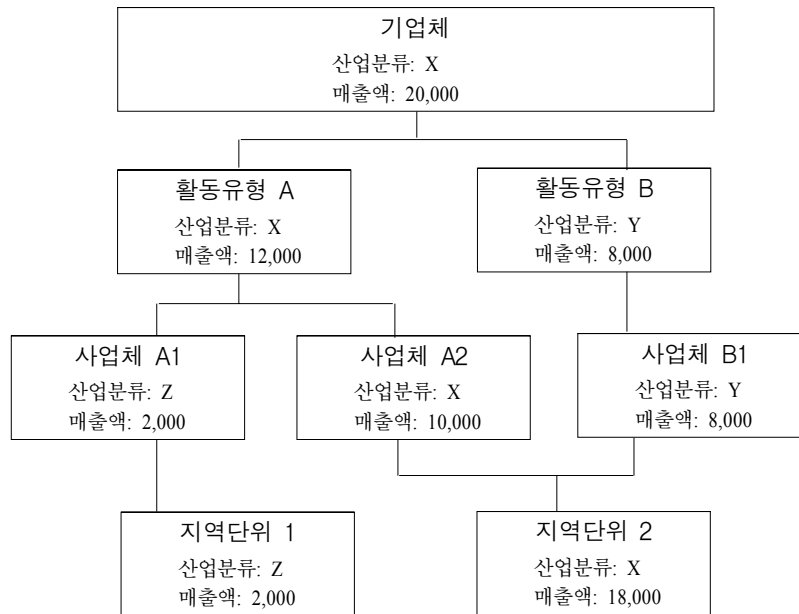
5) Andreas Lindner and Morvarid Bagherzadeh(2003).

〈표 4-2〉 통계단위의 유형

통계단위	개념 및 정의	
기업체 (Enterprise)	통계청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로서, 수입·지출에 대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기타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위로 1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
	Eurostat	The enterprise is the smallest combination of legal units that is an organizational unit producing goods or services, which benefits from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in decision-making, especially for the allocation of its current resources. An enterprise carries out one or more activities at one or more locations. An enterprise may be a sole legal unit.
활동유형단위 (Kind of Activity Unit)	통계청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 제한 없이 단일 유형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의 일부
	Eurostat	The kind-of-activity unit (KAU) groups all the parts of an enterprise contributing to the performance of an activity at class level (4-digits) of NACE Rev.1.1 and corresponds to one or more operational subdivisions of the enterprise. The enterprise's information system must be capable of indicating or calculating for each KAU at least the production value, intermediate consumption, manpower costs, the operating surplus and employment and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사업체 (Establishment)	통계청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
	Eurostat	An establishment is defined by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as an enterprise, or part of an enterprise, that is situated in a single location and in which only a single (non-ancillary) productive activity is carried out or in which the principal productive activity accounts for most of the value added.
지역단위 (Local Unit)	통계청	한 장소에서 단일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경제활동
	Eurostat	The local unit is an enterprise or part thereof (e.g. a workshop, factory, warehouse, office, mine or depot) situated in a geographically identified place. At or from this economic activity is carried out for which — save for certain exceptions — one or more persons work (even if only part-time) for one and the same enterprise.
동질적 생산단위 (Unit of Homogeneous Production)	통계청	영업이윤의 계산이 가능하고 편제될 수 있도록 단일 장소에서 단일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최소단위
	Eurostat	The unit of homogeneous production (UHP) is characterised by a single activity which is identified by its homogeneous inputs, production process and outputs. The products which constitute the inputs and outputs are themselves distinguished by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been processed as well as by the production technique used, by reference to a product classification.

[그림 4-1] 통계단위 유형 예시

통계단위	예 시			
기업집단	○○그룹			
기업체 단위	○○자동차			
사업체 단위	울산공장	전주공장	영업소(개별)	AS센터(개별)
활동유형단위	제조		판매	수리
지역단위	○○그룹(장소)			



< 산업 X의 매출액 >

통계단위	매출액
기업체	20,000
활동유형	12,000
사업체	10,000
지역단위	18,000

자료: 통계교육원, 「산업분류」.

제3절 기업생멸통계의 선진국 사례

1. 영국

가. 자료등록과 DB 구축

영국의 기업생멸통계는 영국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의 산하기관인 중소기업 서비스청(Small Business Service: SBS)이 작성하고 있다. SBS는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기관이다. SBS는 영국 통계청(NSO) 내의 사업자자료센터인 IDBR(Inter Department Business Register)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IDBR은 영국내 모든 기업체에 관한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있는데, 2007년 3월 현재 210만 개(경제활동의 99%)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IDBR의 사업자등록DB는 국세·관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⁶⁾ 등 주요기관들과 행정자료 공유를 통해 구축되고 있다.

사업자등록DB의 3개 주요 자료원은 ① HMRC로부터 매일(daily) 제공되는 170만 개의 기업체 VAT관련 자료, ② 분기별(Quarterly)로는 소득세 납부를 위한 시스템인 PAYE(Pay As You Earn) 제도 하에 운영되는 110만 개의 고용주 자료, ③ IDBR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40만여 개의 기업 조사자료 등이다.

이 밖에 무역산업부 산하의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가 만든 등록 자료와 기업정보회사인 Dun and Bradstreet의 자료가 이용된다.

IDBR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 조사항목에는 기업체명, 소재지, 산업 분류, 대표자명, 종사자 수, 매출액, 조직형태, 기업그룹명, 소유자 국적, 사업의 종류, 사업자번호, EU국가와의 거래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SBS는 이러한 IDBR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기업생멸통계 자료를 웹사이트(www.sbs.gov.uk)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기업 생성·소멸통

6) HMRC는 2005년 4월에 전 국세청인 Inland Revenue와 전 관세청인 HM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s가 통합·신설됨.

[그림 4-2] 영국의 2005년 기업생멸통계(예시: VAT신규사업체 등록건수)

영역	2001	2002	2003	2004	2005
1.1.A	1,027	1,048	1,060	1,071	1,082
1.1.B	1,027	1,048	1,060	1,071	1,082
1.1.C	1,027	1,048	1,060	1,071	1,082
1.1.D	1,027	1,048	1,060	1,071	1,082
1.1.E	1,027	1,048	1,060	1,071	1,082
1.1.F	1,027	1,048	1,060	1,071	1,082
1.1.G	1,027	1,048	1,060	1,071	1,082
1.1.H	1,027	1,048	1,060	1,071	1,082
1.1.I	1,027	1,048	1,060	1,071	1,082
1.1.J	1,027	1,048	1,060	1,071	1,082
1.1.K	1,027	1,048	1,060	1,071	1,082
1.1.L	1,027	1,048	1,060	1,071	1,082
1.1.M	1,027	1,048	1,060	1,071	1,082
1.1.N	1,027	1,048	1,060	1,071	1,082
1.1.O	1,027	1,048	1,060	1,071	1,082
1.1.P	1,027	1,048	1,060	1,071	1,082
1.1.Q	1,027	1,048	1,060	1,071	1,082
1.1.R	1,027	1,048	1,060	1,071	1,082
1.1.S	1,027	1,048	1,060	1,071	1,082
1.1.T	1,027	1,048	1,060	1,071	1,082
1.1.U	1,027	1,048	1,060	1,071	1,082
1.1.V	1,027	1,048	1,060	1,071	1,082
1.1.W	1,027	1,048	1,060	1,071	1,082
1.1.X	1,027	1,048	1,060	1,071	1,082
1.1.Y	1,027	1,048	1,060	1,071	1,082
1.1.Z	1,027	1,048	1,060	1,071	1,082

자료: SBS(www.sbs.gov.uk, VAT statistics).

계인 VAT신규등록·해지건수 통계(VAT statistics)와 기업생존율 통계(survival rates)를 제공하고 있다. VAT 등록통계는 다음의 4가지 형식의 통계표로 제공된다.

Table 1	지역별 VAT 신규등록·해지 건수
Table 2	산업별 VAT 신규등록·해지 건수
Table 3	선거구별 VAT 신규등록·해지 건수
Table 4	산업소분류 VAT 신규등록·해지 건수

이 통계자료는 1980년부터 작성되어 왔지만 1991~93년 기간 동안 VAT 자진신고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등록건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자, 자료의 기간을 1980~93년과 1994~2005년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생존율 통계는 다음의 15가지 형식의 통계표로 제공된다.

Table 1	3년 생존율, UK지역별
Table 2	1년 생존율, UK지역별
Table 3	3년 생존율, 행정구역별
Table 4	1년 생존율, 행정구역별
Table 5	3년 생존율, UK산업별(SIC 1-digit)
Table 6	1년 생존율, UK산업별(SIC 1-digit)
Table 7	3년 생존율, 도시농촌 구분(잉글랜드, 웨일스)
Table 8	1년 생존율, 도시농촌 구분(잉글랜드, 웨일스)
Table 9	3년 생존율, 지역별·IMD지수별, 잉글랜드
Table 10	1년 생존율, 지역별·IMD지수별, 잉글랜드
Table 11	10년 생존율, UK
Table 12	10년 생존율, 잉글랜드
Table 13	10년 생존율, 웨일스
Table 14	10년 생존율, 스코틀랜드
Table 15	10년 생존율, 북아일랜드

나. 기업 생성·소멸의 개념과 작성방법

영국의 기업생멸통계의 단위는 ‘기업체(enterprise)’이다. 영국의 기업생멸통계상의 기업체의 생성 및 소멸은 VAT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기업의 생성(start-ups) 수는 HMRC에 신청하는 VAT 신규등록 신청(registrations)건수와 동일하며, 기업의 소멸(closures)은 VAT 해지신청(de-registrations)건수와 동일하다.

기업생멸통계는 IDBR로부터 매일 제공되는 기업체 등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생멸과 VAT 등록과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차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규등록의 경우 늦은 등록신청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건수가 증가한다. 반면,

등록해지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휴면상태에 있는 사업체(domant business)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⁷⁾

사업자 고유번호 관리에서는, 영국 통계청은 Eurostat의 권고안을 근거로 마련한 연속성의 원칙(continuity rules)에 따라 진정한 창업과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연속성의 원칙은

- ① 기업통제(Control) : 기업을 법적으로 소유·경영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 바뀌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기업통제의 연속성은 법적 통제주체의 연속성으로 판단한다.
- ② 생산활동(Economic activity) : 주요 생산활동의 변화는 산업분류코드(NACE)의 변화로 판단한다. 따라서 NACE 4단위 기준으로 생산활동 분야가 바뀌지 않으면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③ 기업체의 소재지(location) : 기업체 소재지는 기업체의 토지와 건물에 점유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업체의 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의미한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3가지 요소 중 2가지가 해당될 경우 당해기업의 연속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4-3> 진정한 창업과 폐업에 관한 연속성의 원칙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기업통제상의 법적 변화	N	Y	N	N	Y	N	Y	Y
기업 주요 생산활동의 변화	N	N	N	Y	N	Y	Y	Y
기업소재지의 변화	N	N	Y	N	Y	Y	N	Y
기업의 연속성	Y	Y	Y	Y	N(Y)	N	N	N

주: N: No, Y: Yes.
 자료: 영국 통계청, e-mail 답변내용.

7) SBS(2006a).

한편, 기업생존율 통계조사는 3개월마다 실시된다. IDBR로부터 1995년 이후의 기업등록부 DB를 인수받아 행정구역별, 지역별, 산업별로 구분하고 이를 시차조정 가중치를 통해 조정한다. VAT 신규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기업등록부에서 빠진 기업체는 등록 당해연도에 탈락된 것으로 추정하고, 6~18개월 이내에 탈락된 기업체는 등록연도의 다음연도에, 18~30개월 이내에 탈락된 사업체는 그 다음연도에 탈락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자료의 한계성

영국의 기업생멸통계는 전체 경제활동의 99%를 차지하는 210만 개에 달하는 IDBR의 기업체 등록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되지만, 부가가치세(VAT) 등록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료의 한계가 있다.

첫째, 영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수는 IDBR 등록 기업체수보다 훨씬 많은, 총 430만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IDBR 기업체통계에는 부가가치세(VAT)나 소득세(PAYE) 신고를 하지 않은 220만여 개의 소규모 자영업자나 비영리단체 등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210만 개의 VAT 신고 기업체로 전체 430만 개의 사업체 변동내역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VAT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의 사업체도 기업생멸통계 작성에서 제외되고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 등록 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BS가 실시한 2005년도 연간 소규모 기업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3분의 1 이상이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거나, 사업개시 6개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업체가 거의 절반에 달하였으며, 사업개시 2년 후까지도 등록하지 않은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자료의 활용 및 분석

무역산업부(DTI) 산하기관인 SBS는 기업생멸에 관한 통계생산뿐만 아니라 매년 10월 말경에 전년도의 “Business start-ups and Closures: VAT

registrations and de-registrations"라는 분석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분석자료의 주요내용을 보면, VAT등록 기업 수는 2005년도에 17만 7,900개의 기업이 창업 신고를 하였고, 15만 2,900개가 폐업 신고를 하여 2만 5,000개의 순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과 비교할 경우 창업 신고건수는 5,900개(3.2%) 감소하였고, 폐업 신고건수도 10,500개(6.4%)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인 15세 이상 인구 1만명당 창업 수는 2005년에 37개이며, 폐업 수는 31개를 기록하였다.

〈표 4-4〉 영국의 VAT 신규등록 및 폐업신고건수

	신규등록		폐업신고		총 기업수 (1,000개)
	건수 (1,000개)	1만명당* (개)	건수 (1,000개)	1만명당* (개)	
1994	166.9	36	173.6	38	1,621.8
1995	161.8	35	161.3	35	1,615.0
1996	166.1	36	150.9	33	1,615.5
1997	182.7	39	146.0	32	1,630.6
1998	182.2	39	145.8	31	1,667.3
1999	176.9	38	150.3	32	1,703.8
2000	178.9	38	155.8	33	1,730.4
2001	170.0	36	155.9	33	1,753.5
2002	176.9	37	162.4	34	1,767.6
2003	191.2	40	165.5	35	1,782.2
2004	183.8	38	163.4	34	1,807.9
2005	177.9	37	152.9	31	1,828.2
2006	1,853.2
증가수(04~05, 천개)	-5.9	-2	-10.5	-2	25.0
증가율(04~05, %)	-3.2	-4	-6.4	-7	1.4

주: *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자료: SBS, "Statistical press release - Business start-ups and closures: VAT registrations and de-registrations", SBS, 2006(www.sbs.gov.uk, VAT statistics).

〈표 4-5〉 산업별 VAT 신규등록 및 폐업신고건수

(단위: 천개)

	신규등록		폐업신고		총 기업수	
	2005	전년대비	2005	전년대비	2005	전년대비
전산업	177.9	-5.9	152.9	-10.5	1,853.2	25.0
농업	3.8	0.0	6.6	0.6	142.1	-2.8
광업·에너지·수도	0.2	0.0	0.2	0.0	1.8	0.0
제조업	9.4	-0.6	11.7	-1.3	150.2	-2.2
건설	22.1	-0.2	16.0	-0.5	214.4	6.0
도매·소매·수선	36.1	-0.5	32.2	-3.0	388.3	4.0
호텔·레스토랑	18.9	-1.4	14.5	-2.6	133.0	4.4
수송·통신	9.1	0.0	7.3	-0.4	81.3	1.8
금융	1.7	-0.1	1.5	-0.1	19.5	0.2
사업서비스	64.5	-2.2	50.4	-2.1	552.9	14.2
교육·보건	2.2	0.0	1.5	-0.1	28.4	0.7
기타 서비스	9.8	-0.9	11.1	-1.1	141.3	-1.3

자료: <표 4-4>와 동일.

〈표 4-6〉 지역별 VAT 신규등록 및 폐업신고건수

(단위: 천개)

		신규등록		폐업신고		총 기업수	
		2005	전년대비	2005	전년대비	2005	전년대비
영국전체	건수(천개)	177.9	-5.9	152.9	-10.5	1,853.2	25.0
	1만명당*(개)	37	-1.5	31	-2.4	381	1.8
잉글랜드	건수(천개)	155.6	-4.9	133.2	-9.6	1,581.4	22.4
	1만명당*(개)	38	-1.6	33	-2.7	388	2.0
웨일스	건수(천개)	6.4	-0.6	5.6	-0.5	81.5	0.9
	1만명당*(개)	27	-2.7	23	-2.1	341	2.0
스코틀랜드	건수(천개)	11.5	-0.5	10.2	-0.8	129.2	1.4
	1만명당*(개)	28	-1.2	24	-2.0	310	1.6
북아일랜드	건수(천개)	4.3	0.1	4.0	0.4	61.1	0.3
	1만명당*(개)	32	0.6	30	2.7	455	-3.0

주: *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자료: <표 4-4>와 동일.

산업별로 보면, 사업서비스의 창업건수가 64,500개로 가장 많고, 도소매, 건설이 각각 36,100개, 22,100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폐업건수도 사업서비스, 도소매, 건설 순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년과 비교하여 볼 때, 대부분의 산업에서 창업 및 폐업 신고건수가 불변 또는 감소한 가운데, 특히 농어업 부문의 사업체수가 2,800개 순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잉글랜드의 VAT신고 총 기업체수 158만 개 중 런던과 런던 주변지역인 남동권에 58만 개가 분포하고 있어 전체의 36.7%가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런던지역은 2005년의 경우 33,900개가 창업하고 30,200개가 폐업하여 3,700개의 순증가를 기록하였고, 남동권 지역도 3,100개의 순증가를 기록하여 창업은 주로 런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기업생멸통계를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Barclays은행은 *Barclays Small Business Survey*를 통해 분기별 기업생성 및 소멸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로 영국경제사회연구소(NIESR)에서 발간한 C. Robinson, B.O'Leary, A.Rincon(2006)의 “Business Start-ups and Closures and Economic Churn”은 기업생멸과 경기변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Disney R.J.Haskel and Y.Heden (2003)의 “Entry, Exit and Establishment Survival in the UK Manufacturing”과 “Restructuring and Productivity Growth in UK Manufacturing”은 기업생멸의 주기와 발생률, 생산성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2. Eurostat

가. 자료의 등록과 DB 구축

1990년대 이후 국가별 기업생멸통계뿐만 아니라 EU 전체 차원에서 통계작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EU 집행위는 1996년 “구조적 기업통계에 관한 규정 No.58/97(Council regulation on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no.58/97)”을 채택하는 한편, 1999년부터 각국으로부터 통계를 수집하여 2002년부터는 시험적으로 EU 전체의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림 4-3] Eurostat의 1998~2004년 기업생멸통계(예시: birth rate)

Business demography - birth rate
 Birth rate of enterprises of year t, as a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of active enterprises of year t

A birth amounts to the creation of a combination of production factors with the intention that no other enterprises are involved in the event. Births do not include entries into the population due to mergers, break-ups, split off or restructuring of a set of enterprises. It does not include entries into a sub-population resulting only from a change of activity. A birth occurs when an enterprise starts from scratch and annually starts activity. An enterprise creation can be considered an enterprise birth if new production factors, in particular new jobs, are created. The former just is matched with the new year; this event is not considered a birth.

For downloading the complete table in XLS format, see [data catalogu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EU (excl. UK)								
EU (excl. UK)								
Birth rate								
Belgium	1.90		1.94					19.40 ⁽¹⁾
Denmark				1.14 ⁽¹⁾	1.07 ⁽¹⁾	1.07 ⁽¹⁾		
France	1.07	1.05	1.05	1.27				
Germany (including ex-GDR since 1998)								
Germany			1.28	1.17 ⁽¹⁾	1.14 ⁽¹⁾	1.14 ⁽¹⁾		
Greece								
Ireland	1.71	1.71	1.65	1.35	1.21	1.15	1.15	
Italy	1.10	1.08	1.05	1.05	1.05	1.05	1.11	1.11
Spain								
Sweden								
Finland				1.28	1.21	1.19	1.21	1.21
Netherlands				1.28	1.15	1.15	1.15	1.15
Portugal								
Portugal	1.47	1.51	1.56	1.61	1.65	1.70 ⁽¹⁾	1.75	1.80
Slovenia				1.05	1.10	1.15	1.19	1.24
Slovenia			1.41	1.45	1.49	1.53	1.57	1.61
Slovakia				1.07	1.10	1.13	1.17	1.21
Slovakia			1.07	1.10	1.13	1.17	1.21	1.25
Slovenia	1.20	1.20	1.11	1.01	1.01	1.01	1.01	1.01
Slovenia	1.07	1.07	1.07	1.07	1.07	1.07	1.07	1.07
Malta (beginning)	11.01	11.01	11.01	11.01	11.01	11.01	11.01	11.01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11.20	11.40	11.58	11.76				

자료: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또한 Eurostat는 상기 규정을 근거로 각 회원국들에게 광공업 및 건설업 부문의 기업 생성과 소멸에 관한 통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있어 생멸통계작성은 연도별로 참여국이 달라진다. 2002년에는 EU 12개국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13개국이, 2003년에는 11개국이 각각 참여하였고, 2004년부터는 EU 신규가입국인 동구국가들을 포함한 16개국이, 2005년에는 18개국이 각각 참여하였다.

따라서 유럽 전체의 통계 작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생멸통계는 아직 시험단계에 머물고 있고, Eurostat의 웹사이트에는 일부 국가들의 기업 생성률(birth rate), 생존율(survival rate), 소멸률(death rate)의 통계만을 제공하고 있다.

나. 기업 생성 및 소멸의 개념

1) 통계작성단위로서의 기업체

Eurostat는 기업생멸통계지침서인 “Business Demography Recommendations Manual(2006)”이란 책자를 발간하여, 회원국들에게 기업생멸 관련 용어의 개념을 주지시키고 실제 기업등록상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지침은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자문(advisory)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통일된 통계생산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고 형태의 규정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 지침서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기업생멸통계의 단위로서 기업체(enterprise)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지침서에서 기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기업체란 자원배분 등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이다.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단 하나의 기업체도 하나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업체단위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조사의 최종결과물에서 법적 단위로 얻을 수 있는 기업생멸과 가장 유사한 통계자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범위는 유럽산업분류코드 NACE Rev.1.1⁸⁾의 section C에서 Section K까지와 Section M에서 Section O까지이고 Section 74.15(지주회사의 경영활동)은 제외된다. 따라서 생산, 건설, 유통 및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나, 농업·공공행정, 가계 및 비시장활동, 국외 기관활동 등은 제외된다.

8) http://www.fifoost.org/database/nace/nace-en_2002c.php.

2) 기업의 생성

기업 생성(birth of enterprise), 즉 창업의 개념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은 단위사업체(a local unit)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Eurostat는 EU 집행위원회 규정 제2700/98호에 근거하여 창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⁹⁾

“기업 등록부상의 해당 모집단에 등록된 창업한 기업들의 수에서 오류를 정정한 수. 창업이란 생산요소의 결합(combination of production factors)을 의미하며, 다른 기업들은 이 결합이라는 사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받는다. 이 창업한 기업들 중 일단의 기업들의 합병(mergers), 기업분할(break-ups), 분할설립(split-off)이나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의해 그 모집단에 등록된 것은 제외된다. 또한 오로지 활동의 변경만으로 인해 하위 모집단(sub-population)에 등록된 것도 창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항목의 목적은, 처음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개시한 신규기업들의 생성에 관한 자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기업생성은 새로운 생산요소, 특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경우에 창업으로 보고 있다.

우선 창업에서 제외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생산요소들을 합병하거나 이것들을 두 개(또는 그 이상)의 회사들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생성된 기업(기업분할, 합병, 분할설립, 구조조정)
- ② 이전에 생성된 기업의 활동을 단순히 인수하여 새로 생성된 기업(기업인수)
- ③ 예를 들어, 기존 회사의 부동산이나 직원관리를 위해서만 이 회사에 추가하여 생성한 법적 단위·사업체
- ④ 기존 기업이 법적 형태를 변경할 때 등록된 기업. 예를 들면, 한 개인자영사업자(sole proprietor)가 고향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성공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동시에 회사의 법적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9) Eurostat(2006), p.21.

- ⑤ 2년 이내에 사업을 재개한 기업
- ⑥ 새로운 생산요소의 창출을 포함하지 않는 임시조합 및 합작투자 사업

반면에, 이전에 동일한 활동을 단지 종업원으로서 수행한 사람이 설립한 기업은 창업에 포함된다. 또한 새로 설립된 국내 자회사나 해외 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 ① 이들이 진정한 기업(법적 단위, 지점이나 지방 사업부는 제외)으로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 ② 새로운 생산요소가 다른 곳으로부터의 이전이 아닌, 새로이 생겨난 경우이다.

한편, 진정한 창업의 파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 활동기업의 모집단(N_t) 파악. 여기서 활동이란 주어진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또는 고용을 의미한다.

<제2단계> t 년도의 신규기업 파악. 이 기업들은 t 년도 활동기업 모집단의 부분집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파악한다.

<제3단계> 사업재개기업들 제외.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휴면상태에 있었던 기업들은 신규기업이 아닌 사업재개기업으로 간주된다. 앞의 3단계까지의 절차에 의해 신규기업 모집단이 생성된다.

<제4단계> 기타사항으로 생성된 기업 제외. 창업이 아닌 다른 사항들인 기업분할, 분할설립, 합병, 일대일 기업인수를 통해 생성된 기업을 제외한다. 이들 기업은 '기업명', '경제활동', '장소'의 3가지 요소를 상호 매칭시켜 파악한다.

<제5단계> 오류 정정. 기본적으로 오류 정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지만, 진정한 창업을 완벽하게 파악하려면 일부 자료는 수작업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로부터 아래의 창업관련 통계지표를 산출한다.

- ① 창업률(창업기업이 활동기업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② 규모별 창업수
- ③ 인구 1만명당 창업수
- ④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 1만명당 창업수

3) 기업의 생존과 성장

기업의 생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① t 년도에 창업한 기업은 그 다음연도의 어느 때이든 매출 또는 고용의 측면에서 활동 중인 경우, 그 다음연도에 생존한 것으로 간주한다 (=변화 없이 생존).
- ② 기업이 그 다음연도에 매출 또는 고용의 측면에서 볼 때 활동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은 그 다음연도에 그의 생산요소를 인수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신규기업이 이 기업의 활동을 인수한 경우에는 생존한 것이다(=인수에 의한 생존).

활동은 주어진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의 매출 또는 고용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정의는 앞에서 설명한 활동기업 모집단 및 창업에 사용한 정의와 일치한다.

창업과 생존에 관한 통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규칙이 있는데, 우선 첫째, 신규기업에 의해 인수된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기업이 진정으로 창업한 기업인지 여부를 평가할 때와 동일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특정기업의 생산요소를 인수한 기업이 신규기업인 경우(즉, 인수한 해에 활동을 개시하고 사업재개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피인수기업이 생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예컨대 생존통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집단들에 근거하여 산출될 수 있다.

- ① t 년도에 진정으로 창업한 기업들
- ② $t+1$ 년도 활동기업들
- ③ $t+1$ 년도 전에 활동을 개시한 기업의 생산요소를 인수할 목적으로 $t+1$ 년도에 활동을 개시한 기업들. 이들 기업들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두 개의 변수, 즉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기업의 ID번호와 이 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ID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모집단을 이용하여 생존통계를 작성하며, 다음의 4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표 4-7〉 $t+1$ 년도 생존자료의 산출

	t 년도 창업기업	$t+1$ 년도 활동기업	신규기업이 인수한 기업
Case A	✓		
Case B	✓	✓	
Case C	✓		✓
Case D	✓	✓	✓

자료: Eurostat, *Business Demography Recommendations Manual*, May 2006.

Case A~D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① Case A는 $t+1$ 년도의 활동기업 모집단 및 신규기업이 인수한 기업들의 모집단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 속한 기업은 “ $t+1$ 년도에 생존하지 않은 기업”이다.
- ② Case B는 기업이 $t+1$ 년도의 활동기업 모집단에는 포함되지만 신규기업이 인수한 기업들의 모집단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례이다. 이 기업은 아무 변화 없이 “ $t+1$ 년도에 생존한 기업”으로 분류된다.
- ③ Case C는 기업이 $t+1$ 년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규기업이 인수한 기업들의 모집단에는 포함되는 사례이다. 이 기업은 신규기업이 인수함으로써 “ $t+1$ 년도와 $t+1$ 년도 사이에 생존한 기업”으로 분류된다.
- ④ Case D는 기업이 활동기업의 모집단과 신규기업이 인수한 기업들의 모집단에 동시에 포함되는 사례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t+1$ 년도에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경제활동을 하며 “2개 기업이 공존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방법에 의해 기업생존에 관하여 산출해야 할 통계지표는 신생기업들의 생존율이다.

4) 기업의 소멸

기업의 소멸(death of enterprise)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¹⁰⁾

“기업 등록부상의 해당 모집단에 등록된 소멸한 기업들의 수에서 오류를 정정한 수. 소멸은 생산요소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기업들은 이 해체라는 사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받는다. 소멸에는 일단의 기업들의 합병, 인수, 기업분할 및 구조조정에 의해 해당 모집단에서 퇴출(exit)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활동 변경만으로 인해 하위 모집단에서 퇴출되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소멸의 통계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생산요소의 합병이나 기업분할로 인해 폐쇄된 기업(기업분할, 합병, 구조조정)
- ② 다른 기업이 인수한 활동을 하는 기업(인수)
- ③ 기존 기업이 법적 형태를 변경하였을 때 없어진 기업, 예를 들면 개인자영사업자(sole proprietor)가 고향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성공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동시에 회사의 법적 형태를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 ④ 2년 이내에 사업을 재개한 기업

Eurostat는 많은 기업의 경우 이들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고, 소멸일자에 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입수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거나 영구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때에는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모두 감안하여 판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기업소멸을 파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창업한 기업에 적용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즉, 활동 기업 모집단들(창업의 경우와 같이 고용이나 매출로 정의한 활동)인 N_t , N_{t+1} , N_{t+2} 를 설정한다.

<제2단계> N_t 를 N_{t+1} 과 비교하여 t 년도에만 활동하였고 $t+1$ 년도에 활동을 재개하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낸다.

10) Eurostat(2006), p.36.

<제3단계> 창업의 경우와 같이 사업재개기업들 제외.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휴면상태에 있었던 기업들은 신규기업이 아닌 사업재개기업으로 간주된다. 기업소멸은 최소 2년 동안 활동하지 않은 기업에만 해당된다.

<제4단계> 진정한 기업소멸에 속하지 않은 사건들을 찾아내기 위해 창업에 적용한 것과 같은 기준들과 일치하는 기업들을 찾아낸다. 창업의 경우와 같이 일치하는 기업들을 찾기 위해 ‘기업명’, ‘경제활동’, ‘장소’의 3가지 요소를 상호 매칭시켜 기업분할, 합병, 인수, 분할설립, 구조조정에 의한 기업소멸은 제외한다.

<제5단계> 마지막으로 법적 단위간 연관성을 찾아낸다. 연관성이 발견될 때 이는 진정한 기업소멸보다 다른 요인에 의한 소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얻어진 자료로부터 활동기업들의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백분율로 표시한 기업소멸의 수, 즉 기업소멸 통계를 구한다.

다. 기업의 연속성 원칙과 자료의 작성

Eurostat는 유럽 국가들의 사업체의 진정한 창업과 폐업에 대한 개념을 통일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속성의 3가지 기준을¹¹⁾ 마련해 놓고 있다.

- ① 기업을 통제하는 법적 통제주체의 변화가 있었는가(change of controlling legal unit)
- ② 기업의 주요 생산활동에 변화가 있었는가(change of principal activity)
- ③ 사업체의 소재지가 바뀌었는가(change of main location)

여기서 법적 통제주체는 기업을 법적으로 소유·경영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주요 생산활동의 변화는 산업분류코드(NACE)의 변화로 판단하며, NACE 4단위 기준으로 생산활동 분야가 바뀌지 않으면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체 소재지는 사업체의 토지와 건

11) Eurostat(2006), p.16.

물이 점유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사업체의 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의미한다.¹²⁾

<표 4-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3가지 요소 중 2가지가 해당될 경우 당해기업의 연속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사업장이라도 기업의 법적 통제권이 바뀌고, 주요 생산활동이 바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한다. 동일한 생산활동이라도 기업통제와 사업장이 바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한다. 또한 동일한 기업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주요 생산활동과 사업장이 바뀌면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Case 5의 경우 기업통제상의 법적인 변화가 있고 소재지가 바뀌었다더라도, 비법인형태의 기업이 소재지를 옮기면서 동시에 법인조직화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경우는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의 연속성’도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소규모기업일수록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연속성 원칙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즉 사업의 인수(take-over), 기업분리(break-up), 재개(reactivations)의 경우이다. Eurostat는 사업의 인수와 분리의 경우는 대부분 기업체의 연속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기업분리(break-up)와 분할설립(split-off)은 혼동되기 쉬운데, 개념상 기업분리는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으로 쪼개지는 경우이며, 분할설립은 모기업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경우이다. 기업분리의 경우 모기업이 생존하지 않으나, 분할설립의 경우 모기업만 생존하는 것으로 작성된다. 사건발생시 사업체등록건수는 <표 4-8>과 같다.

또한 사업의 재개일 경우는 다음 3가지의 경우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활동이 계절성을 보이는 경우. 예컨대 관광업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폐업신고한 후 당해 연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면 사업체의 연속으로 간주한다. 둘째,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예컨대 사업가가 질병, 사고, 군복무 등의 이유로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경

12) Eurostat, *Business Register Recommendations Manual*, 2003 Edition, p.122.

우, 24개월 이내 사업활동이 재개되지 않으면 기존의 사업은 소멸되고, 다시 창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외부요인으로 생산마비의 경우, 예컨대 화재발생으로 생산활동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24개월 이내 사업활동이 재개되지 않으면 기존의 사업은 소멸되고, 다시 창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요컨대, 사업체의 연속성은 고용, 기계 및 장비, 부지, 빌딩, 경영, 무형자산 등의 생산요소의 연속성이 있는가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상기의 연속성의 3개 기준 가운데 2개 기준이 변한다면 새로운 생성 또는 소멸로 간주한다.

〈표 4-8〉 기업체 생멸과 기업등록 생멸의 관계

	실제 발생하는 사건		기업체 등록	
	사건전 기업체수	사건후 기업체수	기업생성수	기업소멸수
생성	-	1	1	-
소멸	1	-	-	1
소유권 변동	1	1	-	-
합병	N	1	1	N
인수	N	1	-	N-1
분리	1	N	N	1
분할	1	N	N-1	-
조인트벤처 생성	N	N+1	1	-
조인트벤처 소멸	N	N-1	-	1
한 기업체내 구조조정	1	1	-	-
한 그룹내 구조조정	N	N	0 또는 그 이상	0 또는 그 이상
그룹의 변동	1	1	-	-
복합구조조정	N	N	0 또는 그 이상	0 또는 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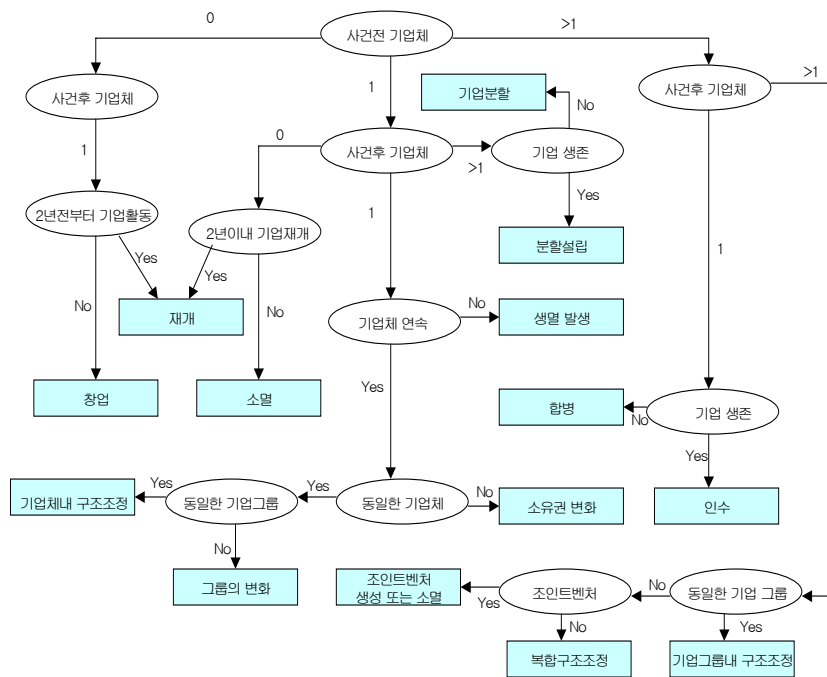
주: N = 2개 또는 그 이상.

자료: Eurostat, *Business Register Recommendations Manual*, 2003 Edition, p.116.

또한 기업체의 생성·소멸은 기업체고유번호의 생성·소멸과 동일 시되지는 않는다. 이는 첫째, 기업의 생멸은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고유번호의 생멸은 사업등록상의 변동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생멸은 단지 한 사업체에 국한되는 개념이지만, 고유번호는 여러 기업체가 관련된 사건, 예컨대 합병·분리로 인해 생성 또는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체 생멸과 사업등록 생멸의 관계는 <표 4-8>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기업체 조직형태의 변화가 발생하여 등록상의 변동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각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4-4] Eurostat 기업생멸의 의사결정 매트릭스



주: 숫자(0, 1, >1)는 기업체 개수.

영문용어: 창업(real birth), 재개(reactivation), 소멸(real death), 기업그룹내 구조조정 (re-structure within enterprise group), 기업분할(break-up), 분할설립(split-off), 합병(merger), 소유권변화(change of ownership).

자료: Eurostat, *Business Register Recommendations Manual*, 2003 Edition, p.117.

라. 자료의 한계성

Eurostat의 기업생멸통계의 한계는 우선, 통계단위의 한계성을 들 수 있다. Eurostat는 EU규정(Council Regulation)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계단위로 기업체(enterprise)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Eurostat가 정한 개념과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기업체 통계의 비교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³⁾

또한 아직은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통계를 수집하고 있어 독일,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연도별로 참여국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EU 전체 통계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 전체의 통계 작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생멸통계는 아직 시험단계에 머물고 있고, Eurostat의 웹사이트에서는 일부 국가들의 기업생성률(birth rate), 생존율(survival rate), 소멸률(death rate)의 통계만을 제공하고 있다.

마. 자료의 분석 및 활용

Eurostat는 2007년 3월에 *Statistics in Focus*를 통해 2003년도 EU 기업생멸통계 분석자료인 “Business Demography: Growth in the Population of Enterprises”와 “Business Demography: the Impact on Employment”의 2가지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 통계이용 가능한 EU 17개국¹⁴⁾의 신생기업수는 120만 개이며, 이들 신생기업은 2003년 활동기업수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기업 생존율은 78.3%이며, 5년 기업 생존율은 47.5%, 소멸률은 7.8%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의 경우 창업률은 5.8%로서 건설업(11.1%)과 서비스업(9.4%)에 비해 저조한 상태이지만, 2년 생존율 81.3%는 건설

13) OECD, SBS Expert Meeting ‘Towards better Structural Business and SME Statistics’, 3-4 November 2005, Agenda Item 7: Unlocking the potential of Micro data, item 7(a): “Moving Towards Comparable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p.6.

14) 체코(CZ), 덴마크(DK), 에스토니아(EE), 스페인(ES), 이탈리아(IT), 라트비아(LV), 리투아니아(LT), 룩셈부르크(LU), 헝가리(HU), 네덜란드(NL), 포르투갈(PT), 루마니아(RO), 슬로베니아(SI), 슬로바키아(SK), 핀란드(FI), 스웨덴(SE), 영국(UK).

업(77.6%)과 서비스업(78.1%)에 비해 높은 편이며, 소멸률도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9> EU 17개국의 기업 창업률·생존율·소멸률(2003년)

(단위: %)

	17개국 평균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경제전체(NACE 분류 C to K, 74.15 제외)								
창업률	9.2	18.7	6.4	9.8	7.2	8.5	6.1	13.2
2년생존율	78.3	69.6	93.7	73.8	77.5	74.1	87.2	82.5
소멸률	7.8	9.9	4.3	6.1	7.4	9.0	5.2	11.3
제조업(NACE 분류 C to E)								
창업률	5.8	15.3	6.2	6.0	4.6	5.5	4.6	8.6
2년생존율	81.3	73.0	92.1	78.5	80.6	78.2	89.5	82.7
소멸률	6.8	9.1	5.5	5.1	6.4	6.9	4.5	9.9
건설(NACE 분류 F)								
창업률	11.1	22.1	8.7	12.9	9.5	7.7	5.9	12.9
2년생존율	77.6	74.0	94.1	71.2	79.0	80.0	88.3	82.9
소멸률	8.0	9.2	2.8	6.6	8.3	6.8	4.7	9.7
서비스(NACE 분류 G to K, 74.15 제외)								
창업률	9.4	19.2	6.0	9.6	7.2	8.9	6.3	13.9
2년생존율	78.1	68.6	93.9	74.0	76.7	72.6	86.8	82.4
소멸률	8.0	10.1	4.3	6.2	7.5	9.7	5.4	11.7

자료: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48/2007.

산업세분류로 창업률을 살펴보면, 부동산·비즈니스서비스, 건설, 호텔 등의 부문이 가장 높은 상태를 보였고, 특수분류상에서는 운영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활발한 창업활동을 보였다.

국별로 보면 창업률은 포르투갈이 6.4%로 스웨덴(6.1%) 다음으로 매우 낮지만, 2년 생존율은 9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창업률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동구국가인 루마니아로 18.7%를 기록하였고, 대부

분의 동구국가들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루마니아의 2년 생존율은 69.6%로 EU평균(78.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5] 유럽 17개국의 신생기업 비율과 고용자수 비중(% , 2003년)



주: ■ 전체 기업수에 대한 신생기업수의 비중
 ■ 총 고용자수에 대한 신생기업 고용자수의 비중
 ※ 국가명은 각주 21)을 참조.

자료: Eurostat, "Business demography: the impact on employment", *Statistics in Focus*, 49/2007.

한편, 기업생멸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EU 17개국의 신생기업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는 220만 개에 달하며, 전체 고용자수의 3%를 차지하였다. 또한 신생기업 중에는 5인 이하의 기업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소기업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5인 이하의 기업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업생멸에 의해 고용의 변화가 가장 적은 업종은 제조업이며, 고용의 변화가 심한 업종은 부동산 및 비즈니스 사업, 유통업, 건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 창업하여 2003년까지 5년 생존한 기업들의 고용자수의 변화를 보면 <표 4-10>과 같다. 예컨대 2002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경우, 창업연도인 1998년 당시 고용자수는 109만 명인데 2002년까지의 고용자 수는 160만 명으로 51만 명의 고용증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오래 생존할수록 고용자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EU 17개국의 창업 후 5년 생존기업의 고용자수 변화

	창업연도(1998년) 고용자수(천명)	해당연도까지 생존한 기업의 고용자수(천명)	고용자수 변화 (천명)	고용자수 변화율(%)
1999년까지 생존기업	1,610.7	1,880.5	269.8	16.8
2000년까지 생존기업	1,399.3	1,823.4	424.0	30.3
2001년까지 생존기업	1,229.2	1,726.0	496.7	40.4
2002년까지 생존기업	1,093.7	1,604.9	511.2	46.7
2003년까지 생존기업	995.7	1,538.1	542.4	54.5

자료: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49/2007.

3. 미국

미국의 기업생멸통계는 미센서스국의 사업체등록부(BR), 소매·도매·서비스 조사 분야, 센서스국 경제연구센터(CES)의 사업체패널 등 3가지와 노동통계국의 고용통계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업체등록부의 기업생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료의 등록과 DB 구축

미국의 기업생멸통계는 중앙통계기관인 미센서스국(US Census Bureau)에서 작성되고 있다. 미센서스국 내에 있는 사업체등록부(Business Register: BR)에는 750만 개 이상의 고용주 업체(employer businesses, 임금근로자가 있는 사업체/기업체)와 2,100만 개 이상의 비고용주 업체(nonemployer businesses, 임금근로자가 없는 사업체/기업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사업체등록부(BR)를 기초로 기업생멸을 포함한 새로운 기업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 센서스국은 경제센서스의 일부로 실시되는 사업체기

초통계조사인 Survey of Business Owners(SBO) 조사를 매 5년마다 끝자릿수 2와 7의 연도에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SBO는 2002년도 경제센서스이다.

그러나 기업생멸과 관련된 데이터는 매년 실시되는 기업조직조사(Company Organization Survey: COS)와 행정자료 공유를 통해 수집된다. 기업조직조사는 多사업체를 가진 기업체(multi-establishment enterprises)들에 대한 조사로서, 기업체 조직 구성을 조사하며 조사대상은 상위 약 5만 개 기업체인데 샘플조사로 실시된다. 이 조사에서는 기업체 통계자료의 작성뿐만 아니라 기업체 각 사업장의 현황, 사업장 신설 및 폐쇄, 기업분할 또는 매수 등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COS 조사와 함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등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정자료는 사업체등록부의 주요 자료원이며, 단일사업체(single-establishment companies)에 대한 데이터는 주로 이들 행정자료로부터 수집되고 있다.

◇ 국세청(IRS)

국세청으로부터는 단일사업체들의 사업체명, 주소, 첫 분기 고용자수, 분기별 임금, 판매/수입액뿐만 아니라 고용주 임금지불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 사업자고유번호) Payroll Tax)의 관련자료를 제공받는데, 이들 자료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가 없는 '비고용주 업체'에 대한 자료도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된다. 일반적으로 비고용주 업체는 피고용자가 없이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의 사업체로서 임금보다는 수익으로부터 개인소득이 발생된다. 따라서 비고용주 업체에 대한 자료는 임금지불세보다는 영업소득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2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에 1,760만 개의 비고용주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는 주(weekly) 단위로 미센서스국에 제공되는데, 미국 연방법(United States Code) 제26조의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조항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즉, 미연방법은 국세청은 미센서스국에게 “센서스 수행과 통계작성의 목적을 위해, 그러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센서스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는 BMF 자료, 임금지불세 자료, 영업소득세 자료 등 크게 3가지이다.

- ① BMF(Business Master File Entity/Directory) 자료 : 일종의 기업명부로서, 한 사업가가 EIN(사업자고유번호, Form SS-4)을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은 하나의 BMF계정을 개설한다. BMF는 EIN 번호별로 모든 사업 세납자의 정보가 수록된다. 미센서스국은 2,400만 개의 기록물이 담긴 BMF 연간 파일을 매년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다. 또한 매월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된 총 1,800개에 달하는 기록물이 담긴 새로운 BMF파일을 넘겨받고 있다. BMF는 고용주 고유번호와 기타 식별정보,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산업분류코드, 사업현황 지표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이 BMF자료는 사업체등록부(BR)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 사업체 생성, 즉 창업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② 임금지불세 신고(Payroll Tax Returns) : 고용주는 국세청에 고용세 (employment taxes)를 신고하기 위해 분기별 고용주 연방세 납세 신고서(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IRS Form 941)를 제출하게 된다. 미센서스국은 주(weekly) 단위로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서를 넘겨받는데, 총 분량이 연간 2,300만 개(분기당 580만 개)에 달한다. 분기별 신고서 Form 941에는 사업자고유번호(EIN), 3월 12일 고용현황, 3가지 임금관련 사항(총 보상비, 사회보장금, 건강보조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영업소득세 자료 : 고용주는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양식(Form 1120, Form 1065, Form 990, Form 1040, Schedule C 등)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 신고서에는 영업판매/수입, 산업분류코드, 자산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사회보장청(SSA)

한편 신규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자고유번호(EIN, Form SS-4)를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은 사회보장청에 기록물 파일을 넘기는데, 사회보장청은 신규 사업자에게 산업분류코드(NAICS)¹⁵⁾를 할당한다. 사회보장청은 EIN, 6단위 산업분류코드, 고용자수 등의 정보를 미센서스국에 제공한다. 고유번호(Form SS-4) 신청처리 기간은 한두 달이 소요되며, 사회보장청은 월(monthly) 단위로 정보를 미센서스국에 제공한다.

[그림 4-6] 미국의 기업생멸통계(예시: 생멸로 인한 2002/03년 사업체수 및 고용자수 변화)

State	Industry	Description	2002		2003		Change
			Value	%	Value	%	
AL	All industries	Total establishments	1,200,000	100.0	1,200,000	100.0	0
		New establishments	100,000	8.3	100,000	8.3	0
		Discontinued establishments	(100,000)	(8.3)	(100,000)	(8.3)	0
		Establishment deaths	(100,000)	(8.3)	(100,000)	(8.3)	0
		Establishment relocations	(100,000)	(8.3)	(100,000)	(8.3)	0
		Establishment conversions	(100,000)	(8.3)	(100,000)	(8.3)	0
		Net change in establishments	0	0.0	0	0.0	0
		Net change in employment	100,000	8.3	100,000	8.3	0
		Net change in employment due to deaths	(100,000)	(8.3)	(100,000)	(8.3)	0
		Net change in employment due to relocations	0	0.0	0	0.0	0
		Net change in employment due to conversions	0	0.0	0	0.0	0
		Net change in employment due to discontinuances	(100,000)	(8.3)	(100,000)	(8.3)	0
		Net change in employment due to new establishments	200,000	16.7	200,000	16.7	0
		Net change in employment due to discontinued establishments	(100,000)	(8.3)	(100,000)	(8.3)	0

자료: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csd/subs/subsbdyn.htm>).

15)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 노동통계국(BLS)

노동통계국은 실업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구축된 노동패널데이터베이스(Longitude Data Base: LDB)로 알려진 별도의 사업체등록부를 갖고 있다. 이 DB는 국가고용안전청(State Employment Security Agencies)이 분기별 고용·임금조사(QCEW)의 결과를 노동통계국에 보고한 자료로 구축된다. 현재 노동통계국과 미센서스국은 상호 협력협정(MOU) 체결을 통해 산업분류체계를 공유하고 사업자고유번호(EIN)를 중심으로 6단위 산업분류코드(NAICS)의 기업통계를 조정해 가고 있다.

미센서스국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기업생멸통계 자료를 웹사이트(<http://www.census.gov>)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료는 1995/96~2002/03년도까지의 해당연도 사업체수, 생성 및 소멸, 규모 확장 및 수축 등의 통계를 제공한다.

나. 기업 생성·소멸의 개념과 작성방법

1) 기업생멸의 개념

미국의 기업생멸통계의 단위는 ‘사업체(establishment)’이다. 미센서스국의 정의에 따르면, 사업체는 “비즈니스가 수행되거나, 서비스 또는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업장이다”¹⁶⁾. 또한 ‘기업체(enterprise)’는 동일한 소유권 또는 통제 하에 하나 이상의 국내 사업체로 구성되는 사업조직이다. 하나의 사업체를 가진 기업체는 사업체와 동일하다.

한편, ‘상사(firm)’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주 또는 도시권) 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일부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여러 주에 사업체가 있는 기업체의 경우 각 주의 사업체는 하나의 상사로 정의된다. 또한 사업체가 여러 개 있더라도 그 사업체가 모두 동일한 주에 동일한 산업이라면 하나의 상사로 간주된다.

16) An "establishment" is a single physical location at where business is conducted or where services or industrial operations are performed. An "enterprise" is a business organization consisting of one or more domestic establishments under common ownership or control. For companies with only one establishment, the enterprise and the establishment are the same. A "firm" is defined as that part of an enterprise tabulated within a particular industry, state or metropolitan area(US Census Bureau - Introductory Text).

사업체 생성(Establishment Births), 즉 창업은 고용자수가 기준연도 1/4분기에는 제로이지만 차기연도 1/4분기에는 플러스인 사업체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체 소멸(Establishment Deaths)은 고용자수가 기준연도 1/4분기에는 플러스이지만 차기연도 1/4분기에는 제로인 사업체로 정의된다. 사업체 확장(Establishment Expansions)은 기준연도와 차기연도 모두 1/4분기에 고용자수가 플러스이며, 기준연도 1/4분기와 차기연도 1/4분기 사이의 기간 동안 고용자수가 증가한 사업체이다. 사업체 축소(Establishment Contractions)는 기준연도와 차기연도 모두 1/4분기에 고용자수가 플러스이며, 기준연도 1/4분기와 차기연도 1/4분기 사이의 기간 동안 고용자수가 감소한 사업체이다.

2) 기업생멸의 파악과 결정

미셴서스국은 우선 고용주 사업체(employer businesses)의 생성과 소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업체등록부(BR)에 수록된 국세청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신규 사업체의 임금지불 신고서(IRS Form 941)가 국세청으로부터 넘어오면 사업고용주 기록이 BR에 추가되며, 사업자고유번호(EIN)를 기준으로 기록된다. 국세청 자료는 매우 신속히 제공되는 편인데, BR에는 신생기업의 초기 임금지급 후 3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기록되고 있다. 사업체의 소멸은 IRS Form 941에 고용주가 더 이상 고유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체 소멸로 간주한다.

비고용주 사업(nonemployer businesses)의 생성·소멸을 파악하는 데는 국세청의 사업소득세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세 기록이 국세청으로부터 미셴서스국으로 넘어오고, BR에 상응하는 기록이 없을 때 BR에 신생 사업체로 추가된다. 사업소득세 신고가 분기별보다는 주로 연간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파악은 적시에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신규 사업체들은 연간 소득세 신고 이후 몇 달 이내에 BR에 추가되고 있다. 또한 사업체 소멸의 경우도 사업소득세 신고의 종료에 의해 파악한다.

다사업체를 가진 기업체(multi-establishment enterprises)의 단위사업체 생멸 또는 기업체 자체의 생멸에 대한 조사는 미셴서스국이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센서스와 매년 실시하는 기업조직조사(COS)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들 조사에서 기업체들은 사업체의 신규설립과 폐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간 COS조사에서는 약 5만 개의 기업체를 샘플조사하는 데, 이 중 45,000개는 규모가 가장 큰 기업체이며, 약 5,000개는 국세청 신고상 고용 또는 임금지급액에 있어서 변화가 심한 기업체를 추출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세청 자료상 변화가 심한 기업체들은 사업체 생성 또는 소멸의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자료의 한계성

미국의 기업생멸통계의 한계는 우선, 사업자고유번호(EIN)를 중심으로 통계를 작성한다는 데 있다. 즉, 센서스국은 ‘신규(new)’ 고유번호(EIN)는 새로운 사업체의 생성으로 보고, ‘비활동(inactive)’ 고유번호는 사업체의 소멸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질적인 생성·소멸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체 내의 구조조정에 의해서도 EIN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EIN의 생성·소멸이 사업체의 생성·소멸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¹⁷⁾

둘째, 센서스국 내에서 작성되는 소매·도매·서비스 조사의 기업생멸 결정 기준은 사업체등록부와 달리한다. 즉, 센서스국은 고유번호를 ‘신규(new)’와 ‘비활동(inactive)’으로 구분하지만, 소매·도매·서비스 조사에서는 신규(new)·비활동(inactive)·불확실(noncertainty) 고유번호와 조직변화로 구분하여 생성·소멸을 결정한다.

셋째, 센서스의 통계는 노동통계국의 통계와는 기업생멸의 개념, 작성기준,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센서스는 고유번호의 변동을 기준으로 기업생멸을 판단하지만, 노동통계국은 국가실업보험(UI)의 납세계정의 신설과 삭제를 기준으로 기업의 생성과 소멸을 결정하고 있다.

4) 자료의 활용 및 분석

미국은 기업생멸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로,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미센서스국 내의 경제연구소(CES)는 사업체등록부(BR)를 이용하여 경제센서스 범위(제조업, 광업, 건설업, 소매, 도매, 서비스 포함)

17) Bureau of Labor Statistics and US Census Bureau(2005), p.16.

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Establishment)를 대상으로 1975~2005년 기간 동안의 사업체패널(Longitudinal Business Database: LBD)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체패널은 CES 연구원들과 또 다른 통계DB인 연구데이터센터(RDC)에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표 4-11〉 미국의 기업생멸 관련 연구

저자	연도	논문제목
Baily, M.N. et al.	1992	Productivity dynamics in manufacturing plants
Bartelsman and Dhrymes	1994	Productivity dynamics: US manufacturing plants, 1972-1986
Burton, J.N., C.S.King, and J.W.Hunt	2001	Benifits and Limitations of Using Only Administrative Data to Update Current Business Surveys with New Employer Births
Dunne,T.and M.Roberts	1991	Variation in producer turnover across US manufacturing industries
Davis,S.,Haltiwanger et al.	2005	Measuring the dynamics of young and small businesses: Integrating the employer and nonemployer universes
Dunne,T., M.Roberts, and L.Samuelson	1989	Plant turnover and gross employment flows in the US manufacturing sector
Dunne,T., M.Roberts, and L.Samuelson	1988	Patterns of firm entry and exit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Evans	1987	The relation between firm growth, size and age: estimates for 100 manufacturing industries
Foster L., J.Haltiwanger, and C.Krizan	2002	The link between aggregate and micro productivity growth: Evidence from retail trade
Getz,P., J.Kropf, and S.Strifas	1997	Measuring the Contribution of Business Births and Deaths to Overall Employment Movements
Gillott,L.M., J.M.Burton, and C.S.King	2003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to Compute Measure of Size for New Employer Births
Harris R. and P.Hassaszadeh	2002	Plant exits in UK manufacturing, 1974-1995: The impact of ownership changes and age effects
Jarmin,R. and J.Miranda	2002	The Longitudinal Business Database
Jarmin,R., J.Miranda, and K.Sandusky	2003	Alternative Measures of Business Entry and Exit
King,C.S. and R.E.Struble	2001	Procedures to Account for Entries in Business Surveys
Klepper,S.	1996	Entry, exit, growth and innovation over the product life cycle
Kropf,J.,S.Strifas, and M.Traetow	2002	Accounting for Business Births and Deaths in CES: Bias versus Net Birth/Death Modelling
McGuckin R. and S.Nguyen	1995	On productivity and plant ownership change: new evidence from the LRD
Olley S. and A.Pakes	1996	The dynamics of productivity in the telecommunication equipment industry
Stamas,G., K.Goldenberg, K.Levin, and D.Cantor	1997	Sampling for employment at new establishments in a Monthly Business Survey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and US Census Bureau(2005); Catherine Robinson et al.(2006).

<표 4-11>에서 보듯이, 이 LBD와 BR의 기업생멸통계를 이용하여 기업의 생성과 소멸이 경기변동, 일자리 창출 및 소멸, 기업의 생산성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4절 우리나라의 기업생멸통계 작성과 연구

1. 우리나라의 기업생멸통계 작성 현황

우리나라 통계청은 기업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년 전부터 사업체통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지만, 아직도 시스템상 많은 부분이 미비하고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용한 기업생멸통계의 개발과 통계작성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앞에서 살펴본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청은 국세청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빠르고 세부적인 통계업데이트를 요구하는 기업생멸통계 작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통계청에서는 자체적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기업체·사업체 모집단DB 구축과 기업생멸통계 작성을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현장조사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조사단위가 사업체별로 관리되지 않고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고, 또한 같은 장소에서 사업체가 바뀔 경우 전년과 자료를 비교하기가 어려워 자료의 정확성이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국·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세청과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기업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내 기업생멸 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업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인권(2002), 이인권·홍재범(2004), 이병기(2003) 등 서너 건에 불과하다. 이인권(2002)은 한국신용평가(주)의 「한국기업총람」 중 외부감사법인 3,395개 기업 자료(1991~2000)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이인권·홍재범(2004)은 상기 자료의 1988~2001년 기간 동안의 51,77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병기(2003)도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1984~94년 기간 동안의 1,78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기업이 창업 이후 얼마만큼 생존하는가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과 함께,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430만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등록된 사업체가 320만 개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총람」의 5만여 개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이들 연구는 결과의 해석상 한계를 갖고 있다.

〈표 4-12〉 한국의 기업생멸 관련 연구

저자	연도	연구 제목
김혜원	2002	마르코프 모형에 의한 사업체 상태 이행 분석 - 한국의 광공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
이인권	2002	한국기업의 성장동학에 관한 연구
이병기	2003	한국 신생기업의 생존요인: 이론과 실증
이인권·홍재범	2004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제5절 시사점 및 결론

1. 해외사례의 시사점

해외의 기업생멸통계 작성방법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계의 기업생멸통계 작성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4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기업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통계를 작성·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IT기술과 통계작성기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업생멸통계 작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생멸통계 작성은 원자료 수집에 있어서 시의성과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국의 경우는 매일(daily)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체 VAT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분기별로는 소득세 납부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국세청 자료가 통계작성에 활용되도록 연방법(제26조 국세법 조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미센서스국은 국세청으로부터 주(weekly) 또는 월 단위로 BMF 자료, 임금지불세 자료, 영업소득세 자료를 송부받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료수집, 작성 과정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업생멸통계를 작성,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영국의 기업생멸통계는 부가가치세(VAT) 등록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총 사업체수 430만여 개 가운데 210만 개의 VAT 신고 사업체만이 추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기업생멸통계가 사업자고유번호(EIN)를 중심으로 작성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는 실질적인 생성·소멸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체 내의 구조조정에 의해서도 EIN의 변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EIN의 생성·소멸이

사업체의 생성·소멸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EU의 경우에도 아직 시험단계지만 회원국들의 기업통계가 일관성 있게 작성되지 않고 있고, 또한 주요국들이 EU통계 작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EU 전체의 통계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2. 기업생멸통계 작성방안

첫째, 자료수집단계에서는 국세청의 자료 활용이 필수적이다. 기업생멸통계는 통계의 속성상 자료수집의 시의성, 정확성, 효율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를 비롯한 행정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료작성 결과도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

둘째, 국세청의 자료 활용을 위해 사업자등록절차상에 통계청이 개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자고유번호(EIN, Form SS-4)를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은 사회보장청에 기록물 파일을 넘기는데, 사회보장청은 신규사업자에게 산업분류코드(NAICS)를 할당한다. 우리도 통계청에서 신규사업자에게 산업분류코드(KSIC)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국세청 - 통계청 - 시·구청 등의 행정기관간의 행정자료 공유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료의 작성은 창업시 국세청에서 부여받는 사업자고유번호를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창업의 경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기준으로 하며, 소멸의 경우 Eurostat의 지침과 같이 기준연도와 차기연도를 비교하여 차기연도에 활동을 재개하지 않은 기업을 기업소멸로 간주한다.

넷째, 진정한 창업과 폐업의 판단은 쉽지 않으며, 특히 기업합병, 인수, 기업분할, 분할설립, 구조조정, 아웃소싱, 기업명 변경, 기업 이전 등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Eurostat의 진정한 창업과 폐업에 관한 3가지 연속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기업생멸통계 작성에 응용 가능하므로 도입하여 이용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기업생멸 통계자료의 형식에 있어서는 영국의 통계형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지역별, 산업별, 산업소분류별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생존율 통계의 기간은 1년, 3년, 10년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참고자료

- Ahmad N. and S. Vale(2005), "Moving Towards Comparable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SBS Expert Meeting 'Towards better Structural Business and SME Statistics', 3-4 November 2005, La Muette Room 4, Agenda Item 7: Unlocking the potential of Micro data, item 7(a): OECD Statistics Directorate.
- Brandt, Nicola(2003), "Differences in Entry and Exit in OECD Countries - Findings and the impact of methodological differences", The Bologna Process Cross-Cutting Theme: SME Statistics; *Workshop on Improving Statistics on SMEs and Entrepreneurship*, to be held at the OECD Headquarters, Paris, New Building Room 5 On 17-19 September 2003, starting at 9.30 hours.
- Bureau of Labor Statistics(Patricia Getz, Jurgen Kropf, Richard Clayton) and US Census Bureau(Ruth E. Detlefsen, Paul S. Hanczaryk, Ron Jarmin, Edward D. Walker)(2005), "Births and Deaths in Business Surveys", 5/27/2005.
- Eurostat(2003), *Business Register Recommendations Manual*, 2003 Edition.
- _____(2006), *Business Demography Recommendations Manual*, May 2006.
- _____(2007a), "Business Demography: The impact on employment", *Statistics in Focus*, 49/2007.
- _____(2007b), "Business Demography: Growth in the population of enterprise", *Statistics in Focus*, 48/2007
- Lindner, Andreas and Morvarid Bagherzadeh(2003), "A First Analysis of Statistical Strategies Regarding SMEs" , The Bologna Process Cross-Cutting Theme: SME Statistics; *Workshop on Improving Statistics on SMEs and Entrepreneurship*, to be held at the OECD Headquarters, Paris, New Building Room 5 On 17-19 September 2003, starting at 9.30 hours.

- Robinson, Catherine et al.(2006), "Business Start-ups, Closures and Economic Churn - A Review of the Literature," Final report, prepared for the small Business Service,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SBS(2006a), "Business Start-ups and Closures: VAT Registrations and De-registrations in 2005", UK Small Business Service(www.sbs.gov.uk, VAT statistics).
- SBS(2006b), "Survival Rates of VAT Registered Enterprises, 1995-2004, Guidance and Methodology", UK Small Business Service (www.sbs.gov.uk, VAT statistics).